

# 과천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시행세칙

제정 2020.11.10. 세칙 제16호

개정 2020.12.18. 세칙 제18호

**제1조(목적)**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개발업무규정 제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영 제19조 및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발주처”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②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를 말한다.
- ③ “제안부서”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발주부서를 말한다.
- ④ “총공사비”란 해당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1.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4.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5.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③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 ⑦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 ⑧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18.)

- ② 위원장은 도시개발실장으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당해직무 및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7.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8. 건설, 부동산, 재무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9.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10.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⑤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4항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감독기관인 과천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⑧ 위원의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심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9.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업무상 취득한 공사의 사업기밀을 유포 또는 이용하여 공사의 명예 또는 업무상 피해를 끼친 경우
  11. 법률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심의요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운영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이 2개부서 이상의 소관사항이거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합의 또는 협조를 마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부의)** ① 위원장은 제안부서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담당부서는 안전 및 자료를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검토)** ① 위원회는 공사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및 개최)**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해당 심의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 및 외부 위원수를 정한다.
2. 심의위원 후보자는 위원회 구성 정수의 3배 내외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은 후보자 순번에 따라 전화연락을 통하여 확정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심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를 받은 제안부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심의안건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또는 소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제4조제1항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른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심의 내용을 작성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심의내용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2. 참석심의위원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3. 심의내용에 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되어 이해관계자가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제15조(심의결과와 통보)** ① 간사는 회의의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은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담당)** 위원회의 사무는 심의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

**제17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부서의 장이 [과천도시공사 시험 및 심사수당

등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지침)**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안에 따라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0.11.10. 제정 세칙 제16호)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2.18. 지침 제18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11조 관련)

- 0000사업 00사업자 공모-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추천(선정) 참여(참관) 명부

- 선정일시 :
- 선정장소 :
- 참여자

구분	소속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위와 같이 0000사업 00사업자 공모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주택건설 평가위원 추천(선정)에 참여(참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과천시도시공사사장 귀하



[별표 2] (제11조 관련)

## 000별 후보자 고유번호 및 추첨 결과

■ 전문분야 : 00 (선정인원 : 명)

고유 번호	성명	출생년도	연락처		추첨자 서명
			H.P		
			H.P		
			회사		
			집		
			H.P		
			회사		
			집		
			H.P		
			회사		
			집		
			H.P		
			회사		
			집		
			H.P		
			회사		
			집		
			H.P		
			회사		
			집		
			H.P		
			회사		
			집		

[별표 3] (제11조 관련)

- 0000사업 00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

##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선정 결과표

전문분야	고유번호	성명	비 고

2000. . .

추첨자 : \_\_\_\_\_(서명)

통화자 : \_\_\_\_\_(서명)

추첨자 : \_\_\_\_\_(서명)

입회자 : \_\_\_\_\_(서명)

추첨자 : \_\_\_\_\_(서명)

확인자 : \_\_\_\_\_(서명)

[별표 4] (제11조 관련)

## 전화 통화 요령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시공사 ○○○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 ☞ 통화가 가능한 경우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사업 00사업자 공모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평가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평가일정은 **금일** [ ]에 우리공사 ○○○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시 이전에 폐회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평가 종료 시까지는 퇴실이 불가합니다. 가능하시면 본 평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락이 가능하신지요?

### ❗ 거절할 경우

- ➡ “전화 통화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에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다.

### ❗ 수락할 경우

- ➡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평가와 관련하여 섭외절차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우리공사에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척대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사업신청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 제척대상은**

- ① 사업계획서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②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③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④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상 불러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제척사항 해당여부가 없으신지요?

**■ 해당되는 경우**

➡ “전화 통화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에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다.

**■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예, 감사합니다.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선정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이 시간 이후로는 해당 관련자(사업 신청자 등)와 전화통화는 물론 면담도 일체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핸드폰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일정이 금일 00:00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늦어도 10분전까지는 우리공사(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5, ○층 ○○실)에 도착하셔서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등록절차에 필요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가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번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차량번호 기재) 우리공사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1층 입구에 대기하고 있는 저의 안내직원에게 금일 평가위원임을 밝혀주시면 저희 직원이 동승하여 주차 및 심사장소까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 이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내선번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공사(○○실)에서 금일 00시 0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5] (제11조 관련)

##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출석위원 서명부

- 안 전 명 :
- 일 시 :
- 장 소 :

성 명	서 명	평가수당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2020. . .

과천시공사 사장 귀하

## 청렴 및 보안서약서

본인은 「○○○○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위촉을 승낙하고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계획서 평가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채점할 것입니다.
2.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3. 기타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 성실성 · 객관성을 갖고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 .

평가위원 : (서명)

[별표 7] (제6조 관련)

## 제척확인서

본인은 「0000 사업계획서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제척기준에 해당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관련사실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발생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척기준

- ①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②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③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④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

1	
2	

2020. . .

평가위원 :

(서명)

과천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표 8] (제5조 관련)

##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본인은 과천시공사에서 시행하는 「  
」을 위  
한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합니다.

구 분	성 명
평가위원장	

2020. . .

평가위원 : \_\_\_\_\_ (서명)